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특구육성종합계획에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,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특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사업에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6조·제6조의2·제48조).
-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·제품의 실증특례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위한 신청 내용이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실증특례 지정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·방식·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·유사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심의·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(안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 신설).
-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·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하여는 시·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제2항 신설).
-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·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학교 전학·입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22조의2 신설).

- 특구 내 문화예술·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및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사증 발급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(안 제22조의3 및 제25조의2 신설).
-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, 임시허가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「감사원법」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71조의2 신설).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1조의3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71조의2¹⁾에서는 “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”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「감사원법」 제34조의3²⁾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³⁾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은 자연인인 사람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,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적극행정 면책을 인정하도록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동 찬)

-
- 1) 제71조의2(적극행정 면책 특례)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6조의2, 제16조의3,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「감사원법」 제34조의3 및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- 2) 제34조의3(적극행정에 대한 면책)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, 운영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.
- 3) 제23조의2(적극행정에 대한 면책)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, 운영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